

대전지방법원 2018. 5. 11 선고 2017나11268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18. 5. 11 선고 2017나112681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17. 9. 8 선고 2016가단15744 판결

전문

원고,피항소인 A

피고,항소인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
변론 종결 2018. 4. 20

판결선 고 2018. 5. 11

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. 9. 8. 선고 2016가단1574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(변경전 상호: D 주식회사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06. 9. 7. 접수 제22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, 위 같은
등기소 2007. 5. 8. 접수 제9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위 같은 등기소 2006. 9. 7. 접수
제228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 위 같은 등기소 2006. 11. 9. 접수 제28302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, 위 같은 등기소 2006. 11. 9. 접수 제283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"9. 7."을 "10. 9/로, 제5면
제4행의 "이라 한다"를 "라 한다"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
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송선양판사 송호철판사 이해선

별지